

수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1489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탈퇴) A조합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권정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80,212,472원 및 그 중 1,253,693,924원에 대하여는 202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2,1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다만,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2항 중 ‘2024. 05. 17.부터’를 ‘2024. 7. 10.부터’로 변경하고, 피고의 근보증한도액이 2,160,000,000원인 사실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민, 판사 유주현, 판사 김경하

별지